

의안 번호	245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2.(금) 정재환 의원 외 4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3.(수)

2. 제안설명 요지(정재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정합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임신, 난임,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장기근속자 연수 지원 항목을 삭제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명칭 변경·정비에 관한 사항
 - 가사휴직 → 가족돌봄휴직(안 제3조)
 - 적정한 → 적절한(안 제17조)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확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기근속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내용 삭제(제4호)
 - 소속 공무원 임신에 관한 격려금품 지급 항목 추가(제6호)
 - 예방접종비 지원 항목 추가(제7호)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제9호)
 -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신설(제10호)

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홍숙)

- 본 개정 조례안은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임신 직원 격려금품 지급 등 직원 후생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 제2항 제5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1. 30.>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10.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1.10.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10.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